

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2885호

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과
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등
시세를 감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
대한 감면 등 9개 조항에 대하여 적용 기한이
'21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
-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감면기한을
'24.12.31.까지 3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
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11. 22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